

과천도시공사 업무직 직원 채용 재공고

과천도시공사에서 함께 근무할 유능한 인재를 채용 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4년 3월 27일

과천도시공사사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방법	채용직급	분 야	인원	담당업무	비고
계			1		
정규직	공개채용	업무직 (현장환경)	탈의실(女)	1	· 공사 내 여자 탈의실 및 샤워장 관리

2 응시자격

분 야 별	자 격 기 준
탈의실 (女) 업무직 (현장환경)	<input type="checkbox"/>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유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에 해당되지 않는 자 <input type="checkbox"/>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취업제한 적용에 해당되지 않는 자 <input type="checkbox"/> 공사 상근인력관리규정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input type="checkbox"/>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만18세 이상인 자로 공사 정년 (만60세) 이하인자 <input type="checkbox"/> 성별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근무하는 장소로 여자 만 지원 가능

3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채용절차	일 정	비 고
채용공고(12일간)	2024. 3. 27.(수) ~ 4. 8.(월)	· 홈페이지, 클린아이, 구직사이트
원서접수(6근무일)	2024. 4. 1.(월) ~ 4. 8.(월)	·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1단계 서류전형	2024. 4. 9.(화) ~ 4. 11.(목)	· 접수 현황에 따라 변경 가능
서류전형 합격자공고	2024. 4. 12.(금)	· 공사 홈페이지, 클린아이 게시
2단계 면접	2024. 4. 15.(월) ~ 16.(화)	· 접수 현황에 따라 변경 가능
최종합격자발표	2024. 4. 17.(수)	· 공사 홈페이지
임용후보자 등록	2024. 4. 18.(목) 18:00까지	· 임용등록 관련서류 제출
임용예정일	2024. 4. 22.(월)	

※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문* 을 통해 **전형별 합격자 발표 및 일정** 안내

1.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4. 4. 1.(월) ~ 4. 8.(월) 기간 내 24시간

단, 시작일(4.1.)은 09:00부터, **마감일(4.8.)은 18:00까지** 접수 가능

나. 접수방법: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

- **과천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gcuc.or.kr>)** → 「**채용정보 및 지원하기**」

※ 지원서 제출 완료 후에는 수정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서류

기본 제출 서류 (이외의 서류 제출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별지 참조, 반드시 지정양식 사용)▶ 개인정보 제공 활용동의서 1부(별지 참조) <p>※ 위 서류들을 한 파일로 취합하여 1개의 PDF파일로 제출 제출파일명: 채용분야(성함) 예) 여자탈의실(김과천).pdf</p>
면접시험 전형 시 제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1부▶ 자격증 사본 1부▶ 우대사항 관련 증명서 <p>※ 해당자에 한해 면접시험 전형 시 제출 (확인 후 반환)</p>

<주의> 본 채용은 블라인드채용으로 출신지, 나이(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등), 출신학교, 부모직업 등이 노출 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탈락처리 됩니다.

4 전형단계

1. 전형절차

1단계	⇒	2단계
서류전형		면접전형
적격자 전원 면접 대상		채용인원 + 예비합격자(채용인원 3배수 이내)

※ 가산점 사항

-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정 출신 지원자 :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3~5% 가산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에 같음하여 실시하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
- 해당분야 공사근무 경력자 : 근무 기간에 따라 2~3%를 가산

2. 서류전형

- 심사일자: **2024. 4. 9.(화) ~ 4. 11.(목)**
- 심사기준: 제출 자료를 기준으로 구비서류, 응시자격 적합여부 (※**면접시 증빙제출필수**)
- 합격기준: 적격자 모두 합격처리
-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2024. 4. 12.(금)**

3. 면접전형

- 시험예정일: **2024. 4. 15.(월) ~ 16.(화)** 시민회관 별관3층 열린혁신룸(예정)
- 시험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 시험유형: 블라인드 면접전형

구분	면접전형
평정요소	공사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20점),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20점), 전문인의 기본자질 및 전문지식(20점), 성실성(15점), 도덕성(15점), 협조성 및 조직적응(10점)

- 합격기준: 면접 점수와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공고: 2024. 4. 17.(수)

4. 임용

- 임용후보자 등록: 2024. 4. 18.(목) 18:00까지 / 임용예정일자: 2024. 4. 22.(월)
- 임용 이후에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임용이 취소됨
-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및 6개월 이내 퇴직, 또는 6개월 이내 동일직종·분야 결원발생시 임용할 수 있음 단,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공사 여건에 따라 예비합격자 임용이 아닌 신규채용 절차로 모집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정규직)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임용하고, 수습기간 평가 성적이 70점 미만인 경우 또는 평가항목 중 평가자 2인이 같은 항목에 3개 이상 미흡으로 중복하여 평가한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면직될 수 있음

5. 이의신청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 채용과 무관한 질의사항, 개인정보 (운영자, 시험출제자, 면접시험점수, 다른 응시자의 성적 등), 지식재산권(외부출제) 등 타법령에 저촉되는 경우는 제외

5 근무조건

구분	탈의실
근무기간	○ 임용일 ~ 정년까지 (만60세)
근무시간	○ 주 40시간 - 평일 05:30~14:30 or 13:30~22:30, 토 06:00~18:00
근무패턴	○ 월 단위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 - 일8시간(정규근무)을 초과하는 근무분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함 - 공사 운영에 따라 토요일 또는 휴무일(일·공휴일) 근무가 가능하여 함
근무장소	○ 과천시민회관, 관문실내체육관 및 청소년 수련관 등 공사가 관리하는 청사 내 탈의실
보수수준	○ 연봉 26,000천원 (2024년 업무직 현장환경 1호봉 기준)
	○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평가급 등은 공사 내규에 따라 지급 ○ 기타복리후생 - 4대보험, 연차휴가, 선택적복지포인트, 건강검진, 직원 휴양소 등

6 유의사항

1.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 가.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자격요건(자격 및 경력사항 등)**이 적합한지를 미리 확인하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 본인이 기재한 작성사항 및 제출서류 기준으로 자격 적합 여부 등을 판단하며, 잘못 기재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 나. 응시자는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시 **인적사항(사진, 학교명,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제외하고 기재하셔야 하며, 면접전형 시에도 위와 관련된 사항을 발언할 경우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다.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을 기재하시기 바라며, 추후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하거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최종 합격 하더라도 취소되며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2. 제출서류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자격 미달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합격자 통지 및 임용된 경우에도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임용이 취소됩니다.**
3.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음
4.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제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청구 기간 내에 요청 시 반환하되,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반환청구기간 :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90일 이내
 - ※ 반환청구기간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되며 반환 불가합니다.
 - 청구양식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 청구방법 : 반환청구서를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
 - 반환방법 : 수취인 비용부담의 등기우편물 또는 직접 방문수령
6. 과천도시공사는 직원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 청탁도 일절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돌아갑니다. 채용이 확정된 이후에도, **최종합격자의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7. 과천도시공사는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8.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과천도시공사 인사부(☎(02)500-1123)로 문의 바랍니다.

<참고사항. 응시자격 결격사유>

※ 과천시공사 상근인력관리규정 제15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21., 2016. 1. 19., 2016. 5. 29., 2018. 1. 16., 2018. 3. 13., 2019. 11. 26., 2020. 6. 2., 2020. 12. 8., 2021. 1. 12.>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2의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 2의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

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센터
- 6의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8.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같은 법 제17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10.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이 경우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 한정한다.
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4. 「경비업법」 제2조제1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5.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의 청소년활동의 기획·주관·운영을 하는 사업장(이하 "청소년활동기획업소"라 한다)
16.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17. 아동·청소년의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이하 이 호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시설등
 - 가. 아동·청소년과 해당 시설등의 운영자·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 사이에 업무상 또는 사실상 위력 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 시설등
 - 나. 아동·청소년이 선호하거나 자주 출입하는 시설등으로서 해당 시설등의 운영 과정에서 운영자·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에 의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등
18.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동·청소년이 찾아오는 방식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이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이라 한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20.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시설
2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2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8. 1. 16.>
 -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 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8. 1. 16.>
 - ④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5. 29., 2018. 1. 16.>
 - 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5. 29., 2018. 1. 16.>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2018. 1. 16.>

⑦ 제1항제22호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이 제5항에 따라 취업 중인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경우, 그 취업 중인 자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다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1. 26.>

⑧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 2018. 1. 16., 2019. 11. 2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3. 29.>

- 1.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2.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신설 2016. 3. 29.>

- 1.공공기관
-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3.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 가.«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 나.«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 다.«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 라.«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마.«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 바.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 유관단체
 - 사.«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 아.«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 자.«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3. 29.>

④「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6. 3. 29.>

[제목개정 2016. 3. 29.]